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28
----------	-----

발의년월일 : 2007. 9. 5.

발의자 : 광영교 의원 외 5인

1. 제안이유

행정의 복잡 다양화·다변화 추세와 수준높은 시민의 의정활동 기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능력 함양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회의를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 규정함(안 제5조).
- 마. 위원 해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 합의 / 참석자 수당 등
- 다. 기 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4급 상당 이상의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실비보상)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전문가는 당해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가목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계약직공무원의 봉급 한계중 전임계약직공무원 가목의 한계금액과 그 50퍼센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고서를 접수한후 지급한다.

⑤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전에 대한 안전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 기간내에 위촉안전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전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위촉안전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